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3. 16.(목)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중찬)

#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황두영 의원 외 18명

### 2. 제안이유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원활한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시행규칙에서 운영세칙으로 변경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확대 규정함(안 제2조)
-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의 정의규정을 그대로 인용함이 바람직하여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4조)
- 다.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다자녀 가정에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시행규칙에서 운영세  
칙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조)

#### 4. 검토의견

##### 가. 개정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자 개정함

#####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는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 지원범위를 확대함
- 안 제4조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정의규정을 그대로 인용함
-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8조는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원기준을 정비함

#####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2021년도 기준으로 경상북도에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중에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전체 10.4%이고 ‘2자녀 이상’인 가구가 48.3%인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에 지원범위를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여 경북도내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하는 것임
- 기존 조례에서 미흡했던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개정조례안에 지원계획이 적용될 경우, 다자녀 가정을 시행할 경우 2024년에 약 73억원에 예산을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자체예산으로 충원할 계획이며, 지원혜택을 받는 다자녀 학생은 수업료 1,264명, 수련활동비 24,807명, 졸업앨범비 25,066명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다자녀 학생의 기준확대로 인해 2024년도 1월 개정안 시행 시 비용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출	수업료		3,277,638	3,277,638	3,277,638	3,277,638	3,277,638	16,388,190
	수련활동비		2,232,630	2,214,180	2,185,830	2,174,040	2,122,560	10,929,240
	졸업앨범비		1,754,626	1,746,460	1,724,266	1,729,773	1,685,739	8,640,864
	소계(a)		7,264,894	7,238,278	7,187,734	7,181,451	7,085,937	35,958,294
총 비용(a-b)			7,264,894	7,238,278	7,187,734	7,181,451	7,085,937	35,958,294

-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되며,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효율적인 추진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그 목적과 개선방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